

2026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 ◇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및 순찰 강화
- 사전 홍보·계도(6월), 집중 감사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기술지원(상시) 등

I 배 경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녹조 발생 등 가중 우려
 -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수의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우려
-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 홍보·계도, 순찰 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등 필요

II 개 요

- 점검시기: 2026. 6. 11.(목) ~ 8. 28.(금)
- 점검대상: 총 17개소(붙임1)
- 점검반: 1개반 4명(수질관리팀장 외 3명)

반 장			반 원		
성 명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박상진	환경6	650-6987	김선윤	환경7	650-6191
			박지연	환경9	650-6188
			우소진	환경9	650-6184

-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확인
 -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점검표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III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6월)
 - 언론 및 사업장 등 사전홍보를 통한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 강화(6~8월)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우려지역 순찰 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사설, 고장·훼손된 방지사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상시)

IV

세부 추진계획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시·도(시·군·구 포함)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 발송 등
 - 집중호우·장마철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 안내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
 - 악성 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 잦은 위반,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공공수역에 무단배출 및 누·유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
 - 하천, 계곡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등
-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
 - 상수원 상류 주변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사업장 등
-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하천·계곡의 식품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불법행위 등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상시)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사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지역 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및 영세·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V

행정사항

-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 (붙임2에 따라 ‘26. 8. 31.(월)까지 제출)
- 자체 단속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전 홍보 및 계도 시행
-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문 홍보와(붙임3, 4) 오염 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대기 및 폐수 시료는 채취 오염도 검사 의뢰(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 경미한 사항 적발 시 현장 지도·계도
-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 및 사진 촬영 등 증거확보 철저

VI

향후계획

- 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및 무허가(미신고) 등 주요 위반행위 홈페이지 공개
- 비정상 운영 등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행위는 강력한 조치
- 고의적인 불법행위 업체 등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

- 붙임 1. 하절기 특별점검 대상업소 현황 1부.
2.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서식) 1부.
3. 환경신문고 홍보 포스터(국번 없이 128) 1부.
4.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1부. 끝.

붙임1

하절기 특별점검 대상업소 현황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점검구분	업종	업소규모(종)		관리등급
					대기	수질	
1	우일음료(주)	예천읍 농공단지길 9	공통	비알콜성음료제조	3	3	일반
2	톨립인터내셔널(주)	보문면 산단길 13-3, 17	공통	비알콜성음료제조	3	3	일반
3	(주)뚜또	예천읍 농공단지길 43	공통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	4	일반
4	공군제16전투비행단	유천면 예성로 357	공통	국방 행정	5	5	우수
5	해트리푸드	보문면 산단길 42	단독(수질)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	일반
6	예천군체육사업소	예천읍 충효로 393	단독(대기)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4		우수
7	서부공항주유소	예천읍 예성로 894	단독(수질)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5	우수
8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예천읍 도효자로 87-56	단독(수질)	일반 공공 행정		5	일반
9	스마트워시 JIT예천점	예천읍 이미기길 13	단독(수질)	자동차 세차업		5	일반
10	예천군농업기술센터	풍양면 삼강로 451-1	단독(수질)	일반 공공 행정		5	일반
11	예천대한펌프카	예천읍 경서로 2462-40	단독(수질)	자동차 세차업		5	일반
12	대신펌프카	예천읍 지내길 6-19	단독(수질)	자동차 세차업		5	일반
13	자옥산맥반석	호명읍 원곡길 23	단독(수질)	석제품제조시설		5	일반
14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예천읍 상동길 49-50	단독(대기)	지방행정 집행기관	5		우수
15	대성자동차마을	예천읍 시장로 170-1	단독(수질)	자동차 세차업		5	일반
16	청북주유소	예천읍 양궁로 108	단독(수질)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5	일반
17	찬수네세차장	예천읍 시장로 23-1	단독(수질)	자동차 세차업		5	일반

붙임 2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예천군)

□ 배출업체 단속 실적

-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건수)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계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준 초과	기타		

- (주요 위반사례)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조문)	처분내역 (적용법조문)

※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발건 위반사례 위주 작성

□ 하천 등 순찰 활동 실적

-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 하천 등 00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하천·계곡 불법영업(시설) 단속 실적

-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 총 00지역 00회 단속, 적발사항 00건, 고발 00건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유입 상수원	위반내역 (위반법조문)	처분내역 (적용법조문)

□ 기타 실적

-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00개소
-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0건, 홈페이지 게재 0개소
-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 : 00건
- 환경오염 예방 관련 상담 건수 : 00건
- 기술지원 실적 : 00개 사업장, 00건(총 00명 기술인력 동원)



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
우리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환경오염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 입니다.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과다배출 등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폐기물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으로 신고 가능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포상금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단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00시·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6.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 ※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